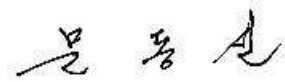


군산시의회의결을 얻은 군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11월 1일

군산시 조례 제1047호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각종 자재·장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건설기계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이하 자재·장비의 임대료를 포함한다)·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4. “임대료”란 공사와 용역에 이용되는 각종 자재와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

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등을 말한다.
6. “관급공사”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말한다. 이 경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포함한다.
7. “발주자”란 공사 또는 용역을 사업주에게 도급하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8.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 감리원을 말한다.
10.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1.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이하 “시의 관급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종합공사, 5천만원 초과 전문공사, 4천만원 초과 기타공사
2.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3.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체불임금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3월

말까지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표준계약 및 건설기계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가청구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사역한 경우 : 근로자 표준계약서, 근로자 명부 및 임금 청구확인서

2. 건설기계를 임차한 경우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명부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

④ 사업주는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아 이를 점검·확인한 후, 해당 공사 기성 및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관급공사 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지급 예고) ① 발주자는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유·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로부터 대가지급 사실을 통지받은 계약상대자는 즉시 제5조 제3

항 제1호 제2호의 당사자에게 유·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금청구시 별지 제4호서식의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4.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발주자가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체불임금 등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제9조(계약의 제한 등) 발주자는 원도급자 등이 임금 적기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을 위반한 경우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 상담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시장은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업주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근로자 사역내역서

☐ 사 업 명 :☐ 업 체 명 :☐ 공사기간 :

근로자		사역일	연락처	비고
성명	주소			
		~ (일간)		

위 공사(용역) 사업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를 사역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군 산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건설기계 사용주		건설기계 장 비 명	사용일수	연락처	비고
성명	주소				
			~ (일간)		

위 공사(용역) 사업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를 사용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군 산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3호서식]

임금 지불 서약서

우리 업체에서는 군산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군산시에서 추진 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군 산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4호서식]

임금 청구 확인서

☐ 사업명 :☐ 업체명 :☐ 공사기간 :

근로자		사역일	청구금액(원)	연락처	비고
성명	주소				
		(~ 일간)			
합계					

상기 건설공사(용역) 사업에서 근로자의 임금 청구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군 산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건설기계사용주		건설기계 장비명	사용일	임대료 청구금액(원)	연락처	비고
성명	주소					
			(일간)			
합계						

상기 건설공사(용역) 사업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내역이 사실
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군 산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포함하여 군산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임금과 체불임대료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중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종합공사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전문공사
- 추정가격 4천만원 초과 기타공사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등

나.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유·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함

다.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원도급자 등이 임금 적기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자격 제한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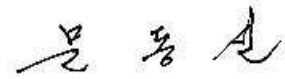
마. 근로자의 임금체불 및 임대료 체납과 관련한 신고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군산시의회의결을 얻은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11월 1일

군산시 조례 제1048호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군산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각급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은
50퍼센트 감면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수련관을 사용하거나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상 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2. (생략) <u><신설></u> 3. (생략)	제9조(사용료의 감면)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군산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각급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은 50퍼센트 감면</u> 4. <u>(현행 제3호와 같음)</u>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청소년 수련관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경감시켜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시설에 대한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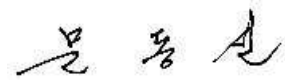
- 가. 제9조(사용료의 감면)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각급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은 50퍼센트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함.

3. 참고사항

- 가. 조례 개정안
- 나. 신·구 조문 대비표 각 1부.

군산시의회의결을 얻은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11월 1일

군산시 조례 제1049호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1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연재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각각 한도액을 5억원과 1억원 이하로 한다.

제1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연재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금리보다 6퍼센트 이내로 낮게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7조(융자 대상업체) 산업자금의 융자 대상업체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체로 한다.	제7조(융자 대상업체)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u>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u>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2조(융자조건) ①자금의 융자는 산업자금에 한하며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미상환액을 포함하여 3억원 이하로 한다. <후단 신설>	제12조(융자조건) ①----- ----- -----.
	다만, <u>자연재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각각 한도액을 5억원과 1억원 이하로 한다.</u>
②자금의 대출금리는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4퍼센트 이내로 낮게 정한다.	②----- ----- -----.
<후단 신설>	<u>다만, 자연재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금리보다 6퍼센트 이내로 낮게 정한다.</u>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건전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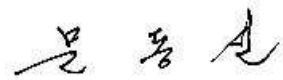
- 가. 용자 대상업체에서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조항을 신설하고(안 제7조3호)
- 나. 용자조건 조항 중 “자연재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각각 한도액을 5억원과 1억원 이하로 한다”와(안 제12조제1항) “다만 자연재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금리보다 6퍼센트 이내로 낮게 정한다”(안 제12조제2항)라는 후단을 신설함.

3. 참고사항

- 가. 개정조례안
- 나. 신·구 조문 대비표

군산시 일상감사규정전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군산시장



2012년 11월 1일

군산시 훈령 제294호

군산시 일상감사규정 전부개정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등 주요업무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감사”란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2. “집행부서의 장”이란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실시주체) 일상감사의 실시 주체는 시장이 일상감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제4조 (실시원칙) ①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의 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부당한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가능한 한 개선 대안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 ①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범위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서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정한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기준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일상감사 시기)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 (“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감사 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5조의 업무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일상감사 요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정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상감사 요청서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감사 실시방법)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직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관련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집행부서의 장과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로 요청된 업무가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협조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전문가가 일상감사에 협조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감사 중점사항)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 추진의 합법성
2. 사업 추진의 경제성, 타당성, 효과성
3. 사업 목적의 적정성
4. 그 밖에 심사가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감사결과 통보 및 처리) ①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의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일상감사 효과) ①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일상감사 결과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부서의 장과의 서면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2조(사후관리)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가 의뢰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기준

구 분	대 상 업 무 및 기 준
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 시정 주요시책 사업의 집행계획 및 계획 변경 • 기타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계약업무	•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기타 계약 － 공 사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 용 역 :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 물품제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그 밖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계약 업무 －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금액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경우 － 당초 일상감사 대상사업중 설계변경 등으로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관급자재 제외)
3. 예산관리 업무	• 예산의 이·전용, 이월, 결산에 관한 사항 (5천만원 이상) •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 • 금고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밖의 업무	• 7천만원 이상의 민간자본보조금 교부 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일상감사 요청서

사 업 명			
사업개요			
관련법규			
담 당 자	소속	직급	성명
첨부서류			
비 고			

군산시 일상감사 규정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일상감사를 의뢰합니다.

2012년 월 일

부서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일상감사 결과회보서

사 업 명	
사업내용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비 고	

군산시 일상감사 규정 제9조에 의거 일상감사 실시의견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12년 월 일

부서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조치결과	
첨부서류	
비 고	

군산시 일상감사 규정 제10조에 의거 일상감사에 따른 조치결과를 위
와 같이 통보합니다.

2012년 월 일

부서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재 검 토 요청사유	
첨부서류	
비 고	

군산시 일상감사 규정 제10조에 의거 위와 같이 일상감사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2012년 월 일

부서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일상감사 처리대장

연 번	접수 일자	사 업 명	감 사 결 과		조 치 결 과		사 업 비			감사자
			통보일자	검토의견	접수일자	조치내용	당 초	변 경	증 감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공고 제2012-2호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군 산 시 장**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2005. 1.1 일 하수도 사용료 인상후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6년동안 사용료 동결하다가 12년도에 20%를 인상하였으나, 현행 징수액만으로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지급 채원조차 마련 불가(현실화율 - 원가의 23.2%)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조례 개정
- 지방공기업전환대상이나 자주재원 미확보를 이유로 추진지연으로 교부세등 불이익 발생 우려
(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 : 1일 처리량 15,000m³이상, 우리시 205,550m³)
- 현재 사용료 수입이 65억원이나, 민감위탁금(하수처리장 27억,

새만금하수처리장 38억, 슬러지처리비15억) 80억원
공공요금 19억원등 조차 마련할수 없어 하수도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함

- 군산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
심의완료에 따른 조례안 개정 ('12. 10. 10)

2. 주요내용

- 하수도 사용료를 50% 인상하되 13년도 20%, 14년도
30%로 나누어 인상하기로 함(조례 제12조 2항))

3. 의견제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1월 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하수과(전화 450-4536, 팩스 450-443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하수과 하수행정계(전화
450-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별표 1] - 변경전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12조 제2항관련]

업종	오 수 량 (m³/월)	요 금(원)
가정용	1-20	150
	21-30	210
	31이상	270
일반용	1-30	210
	31-50	300
	51-100	360
	101-500	480
	501이상	630
욕탕용	1m³당	180
산업용	1m³당	194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 효율이 높은 업종으로 적용함

[별표 1] - 변경후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12조 제2항관련]

업종	오 수 량 (m ³ /월)	요 금 (원)	
		13년도	14년도
가정용	1-20	180	230
	21-30	250	320
	31이상	320	420
일반용	1-30	250	330
	31-50	360	470
	51-100	430	560
	101-500	570	750
	501이상	760	990
욕탕용	1m ³ 당	210	280
산업용	1m ³ 당	230	300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 효율이 높은 업종으로 적용함

군산시 고시 제2012-119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10월 26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산북동 220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 나. 명 칭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설치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시 설 명	결정면적 (m ²)	실시계획인가 신청면적(m ²)	비 고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23,312	23,312	
계		23,312	23,312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구암동 271-2번지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유)씨엔지알텍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10. ~ 2013. 08.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군산시 산북동	2205	답	4,317	4,317	김월윤	군산시 신흥동 37			
						변재형	군산시 신흥동 37			
2	"	2206	답	4,611	4,611	(유)씨앤지 알텍	군산시 구암동271-2	중소기업 은행		근저당
						심재왕	군산시 나운동 345			
3	"	2207-1	답	4,598	4,598	(유)씨앤지 알텍	군산시 구암동271-2	중소기업 은행		근저당
						심재왕	군산시 나운동345			
4	"	2208	답	4,893	4,893	(유)씨앤지 알텍	군산시 구암동271-2			
5	"	2209	답	4,893	4,893	(유)씨앤지 알텍	군산시 구암동271-2			
계					23,312					

군산시 고시 제2012-121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 및 관련지번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 및 변경된 관련지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1. 1. ~ 11. 15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41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변경 : 2건

지번주소	변경된 도로명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관련지번 변경 : 17건

도로명주소	변경된 지번주소	종전 지번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 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2-2054호

임대조건(변경)신고 공고

201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 임대주택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임대조건(변경)신고에 대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 10. 19.

군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12. 10. 19. ~ 2012. 10. 31.

2. 미룡주공(1)아파트(임대조건변경)

임대사업자	성 명 (대표자) 신정근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135671-				
	상 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전화번호				
	주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333-1번지(홍산로 158) (사무소 소재지)						
임대 주택	주택 소재지 군산시 미룡동 897-2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임대 조건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임대조건)		비고
	구분	세대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51.88㎡	644	[불 임]1				
	51.97㎡	30	[불 임]1				
	51.98㎡	60					
	합 계	734					
	임대차 계약기간	변경전 2010년 10월 1일~2012년 9월 30일			변경후 2012년 10월 1일~2014년 9월 30일		
	분양전환시기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붙임]1

미룡주공1단지아파트 임대조건 변경내용

(단위 : 원)

구 분	소득 초과 비율	할증 비율	변경 전 (2010년도)		변경 후 (2012년도)		증 액		비고
			임 대 보증금	임대료	임 대 보증금	임대료	임 대 보증금	임대료	
소득초과자 최초갱신계약	기본(적격자)		14,058,000	86,050	14,732,000	90,180	674,000	4,130	4.8%
	10%이하	100%	14,058,000	86,050	14,732,000	90,180	674,000	4,130	
	10%초과 30%이하	110%	15,463,000	94,650	14,732,000	90,180	-731,000	-4,470	
	10%초과 30%이하	110%	15,463,000	94,650	16,205,000	99,190	742,000	4,540	
	30%초과 50%이하	120%	16,869,000	103,260	17,678,000	108,210	809,000	4,950	
소득초과자 2회차이상 갱신계약	기본(적격자)		14,058,000	86,050	14,732,000	90,180	674,000	4,130	4.8%
	10%이하	110%	15,463,000	94,650	16,205,000	99,190	742,000	4,540	
	10%초과 30%이하	120%	16,869,000	103,260	17,678,000	108,210	809,000	4,950	
	30%초과 50%이하	140%	19,681,000	120,470	20,624,000	126,250	943,000	5,780	

3. 한성필하우스(임대조건신고)

임대사업자	성명 (대표자)	송용상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161511-		
	상호	한성건설(주)		전화번호			
	주소 (사무소 소재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79-2번지, 한성빌딩 3층					
임대 주택	주택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806-3번지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임대 조건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임대조건)		비고
	구분	세대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35.4182	120	18,610,000	308,000	[불임]2		
	59.9370	652	32,410,000	521,000			
	59.9567	40	32,010,000	517,000			
	59.9519	80	32,470,000	521,000			
	합계	892					
	임대차 계약기간	2012년 9월 05일 ~ 2013년 09월 04일					
	분양전환시기 : 2022. 9. 4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붙임]2

한성필하우스 임대조건 변경내용

(단위 : 원)

형 별	층 별	세대수	전환 임대 조건		비 고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35.4192㎡	1층	6	12,000,000	300,000	
			32,000,000	160,000	
	2층	6	15,000,000	300,000	
			34,000,000	160,000	
	기준층	108	18,000,000	300,000	
			37,000,000	160,000	
59.9370㎡ (59 A형)	1층	32	18,000,000	500,000	
			32,000,000	400,000	
			58,000,000	230,000	
	2층	32	20,000,000	500,000	
			35,000,000	400,000	
			61,000,000	230,000	
	기준층	588	22,000,000	500,000	
			38,000,000	400,000	
			64,000,000	230,000	
59.9567㎡ (59 B형)	1층	2	18,000,000	500,000	
			32,000,000	400,000	
			58,000,000	230,000	
	2층	2	20,000,000	500,000	
			35,000,000	400,000	
			61,000,000	230,000	
	기준층	36	22,000,000	500,000	
			38,000,000	400,000	
			64,000,000	230,000	
59.9519㎡ (59 C형)	1층	4	18,000,000	500,000	
			32,000,000	400,000	
			58,000,000	250,000	
	2층	4	20,000,000	500,000	
			35,000,000	400,000	
			61,000,000	250,000	
	기준층	72	22,000,000	500,000	
			38,000,000	400,000	
			64,000,000	250,000	

4. 타워써미트(임대조건변경신고)

임대사업자	성 명 (대표자)	황 의 철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210114-			
	상 호	(유)송정건설	전화번호				
	주 소 (사무소 소재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번지					
임대 주택	주택 소재지 : 군산시 조촌동 3931번지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임대 조건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임대조건)		비고
	구분	세대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59.9438	129	37,316,000	371,000	59,700,000	200,000	당초조건
					74,300,000	110,000	추가조건
	84.9622	277	50,797,000	579,000	81,270,000	300,000	당초조건
					100,000,000	190,000	추가조건
	84.9940	173	50,850,00	579,000	81,270,000	300,000	당초조건
					100,000,000	190,000	추가조건
	84.9126	171	51,533,000	583,000	81,270,000	300,000	당초조건
					100,000,000	190,000	추가조건
	합계	770					
	임대차 계약기간	2012년 7월 ~ 2013년 7월					
	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군산시 공고 제2012-2080호

군산시 방재성능목표 공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군산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일

군산시장

1. 목 적 : 도심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이 통합 방재성능을 발휘토록 방재성능목표를 설정 공표함.

2.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3. 방재성능목표

지역명	강우지속기간		
	1시간	2시간	3시간
군산시	69.5mm	103.9mm	127.3mm

4. 방재성능목표 적용(운용) 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 다.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
-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시설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설

5. 방재성능목표 적용(운용)

- 도시지역 내 택지개발 등 새로운 도시기반 계획수립 시 적용
- 하수관거, 저류지, 펌프장 등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 전반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시 적용
- 방재성능 평가 후 방재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시 적용
-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홍수유출량 산정
 - 홍수유출량 산정은 합리식, RRL 모형, ILLUDAS 모형, SWMM 모형을 활용하고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

6. 방재성능목표 적용일 : 공고일부터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

1. 목 적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3. 용어의 정의

- 방재성능목표 :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

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마련(소방방재청)

- 전 국토를 168개 티센망으로 구성 (별첨 1 : 자치단체별 티센 면적 비율)
 - 서울 및 6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등)는 하나의 티센망 구성
 - 광역시의 군 및 도의 시·군은 각각 하나의 티센망 구성
 - ※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존 충남 연기군 티센망을 적용
- 한국확률강우량(국토해양부, 2011, 69개 지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별 확률강우량 산정 (별첨 2 : 69개 지점 확률강우량)
 - ※ 69개 지점 확률강우량은 재현기간 30년을 기준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별 티센면적 비율을 감안, 전국 168개 지방자치단체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 마련 (별첨 3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 재현기간 30년 상당 확률강우량을 목표 강우량으로 선정
 - 지방자치단체별 확률강우량을 5mm 단위 기준으로 상향 조정
 - 자치단체의 면적이 넓고 인근에 강우관측소가 있는 경우, 티센 면적비율 조정

< 확률강우량 및 방재성능목표 산정 예시 >

- 경기도 여주군의 1시간 확률강우량 및 방재성능목표
 - 여주군의 티센 면적비는 이천 68%, 양평 22%, 원주 10%
 - 확률강우량(국토부) : 이천 76.1mm, 양평 80.0mm, 원주 75.4mm
 - 확률강우량을 여주군의 티센 면적비에 적용시켜 보면
 - 이천지점 $76.1\text{mm} \times 68\% = 51.75\text{mm}$, 양평지점 $80.0\text{mm} \times 22\% = 17.6\text{mm}$
 - 원주지점 $75.4\text{mm} \times 10\% = 7.54\text{mm}$
 - 여주군의 지속시간 1시간의 확률강우량은 77mm이며,
 - $51.75\text{mm} + 17.6\text{mm} + 7.54\text{mm} = 76.89\text{mm} = 77\text{mm}$
 - 여주군의 1시간 방재성능목표는 80mm가 됨.
 - ※ 방재성능목표 설정 시 5mm 단위 기준으로 상향 조정
 - (예. 확률강우량 77mm/h $\Rightarrow$ 방재성능목표 80mm/h)
- 경기 김포시의 티센 면적비는 강화 74%, 서울 26%이나 해당 지역이 강화우량계의 영향권으로 판단되면 강화 100%를 적용할 수도 있음.

5.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자치단체)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설정기준을 활용, 특별·광역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 포함)·군수(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 포함)가 해당 자치단체별 10년 단위(주기)로 방재성능목표 설정
-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설정 기준보다 높거나 낮게 설정하는 경우와 지역특성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할 경우에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 공표한 날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설정

6.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공표(자치단체)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타당성 여부 검토 결과 방재성능목표가 조정되는 경우 변경 공표

7.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적용(운용) 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다.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시설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설(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중 고시 예정)

-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
-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빗물펌프장, 하수저류시설
- 3) 「도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 중 배수로, 길도랑
-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8.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적용(운용)

- 도시지역 내 택지개발 등 새로운 도시기반 계획수립 시 적용

※ 실시설계 시 각각의 배수시설물에 대해서는 개별 시설(설계)기준에 따라 설계

- 하수관거, 저류지, 펌프장 등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 전반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시 적용

- 방재성능 평가 후 방재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시 적용

-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홍수유출량 산정

－ 홍수유출량 산정은 합리식, RRL 모형, ILLUDAS 모형, SWMM 모형을 활용하고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

9. 시행 및 적용시기

- 이 기준은 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기준의 적용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적용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320(2011.3.4)호에 따라 통보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지침」은 동 기준으로 대체

10. 행정사항

- 특별·광역시·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 포함) 및 군수(광역시에 속한 군수 포함)는 ‘12.12.10일까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공표」 완료

※ 시·도에서는 격주단위로 공표결과 제출(격주 금요일)

별첨 : 1. 지방자치단체별 티센면적 비율
2. 69개 지점 확률강우량
3.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별첨 1

지방자치단체별 티센면적 비율

< 지자체별 Thiessen 면적 비율 >

No.	자치단체		Thiessen 면적 비율
1	서울특별시	-	서울-100%
2	인천광역시	-	인천-100%
3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100%
4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46%, 인천-46%, 서산-8%
5	광주광역시	-	광주-100%
6	대구광역시	-	대구-100%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84%, 함천-15%, 밀양-1%
8	대전광역시	-	대전-93%, 금산-7%
9	부산광역시	-	부산-100%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67%, 울산-33%
11	울산광역시	-	울산-100%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97%, 밀양-3%
13	세종특별자치시		청주-40%, 대전-31%, 천안-29%
14	강원도	강릉시	강릉-52%, 대관령-48%
15	강원도	고성군	속초-100%
16	강원도	동해시	강릉-67%, 태백-26%, 대관령-7%
17	강원도	삼척시	태백-89%, 울진-11%
18	강원도	속초시	속초-100%
19	강원도	양구군	인제-99%, 춘천-1%
20	강원도	양양군	속초-59%, 대관령-19%, 강릉-16%, 인제-6%
21	강원도	영월군	제천-60%, 태백-20%, 영주-10%, 봉화-8%, 원주-2%
22	강원도	원주시	원주-89%, 제천-11%
23	강원도	인제군	인제-88%, 속초-12%
24	강원도	정선군	대관령-50%, 태백-48%, 제천-2%
25	강원도	철원군	철원-100%
26	강원도	춘천시	춘천-87%, 홍천-9%, 인제-4%
27	강원도	태백시	태백-100%
28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67%, 제천-25%, 원주-5%, 홍천-3%
29	강원도	홍천군	홍천-64%, 대관령-16%, 인제-16%, 양평-2%, 춘천-2%
30	강원도	화천군	춘천-59%, 철원-32%, 인제-9%
31	강원도	횡성군	원주-56%, 홍천-44%
32	경기도	가평군	춘천-64%, 양평-34%, 서울-2%
33	경기도	고양시	서울-90%, 강화-5%, 인천-5%
34	경기도	과천시	서울-67%, 수원-33%
35	경기도	광명시	서울-85%, 수원-15%
36	경기도	광주시	양평-51%, 이천-33%, 수원-13%, 서울-3%
37	경기도	구리시	서울-100%
38	경기도	군포시	수원-100%
39	경기도	김포시	강화-74%, 서울-26%

〈지자체별 Thiessen 면적 비율(계속)〉

No.	자치단체		Thiessen 면적 비율
40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56%, 양평-44%
41	경기도	동두천시	서울-60%, 철원-40%
42	경기도	부천시	서울-75%, 인천-25%
43	경기도	성남시	수원-72%, 서울-28%
44	경기도	수원시	수원-100%
45	경기도	시흥시	인천-75%, 수원-24%, 서울-1%
46	경기도	안산시	수원-65%, 인천-35%
47	경기도	안성시	이천-49%, 천안-42%, 수원-9%
48	경기도	안양시	수원-81%, 서울-19%
49	경기도	양주시	서울-100%
50	경기도	양평군	양평-83%, 홍천-9%, 원주-8%
51	경기도	여주군	이천-68%, 양평-22%, 원주-10%
52	경기도	연천군	철원-100%
53	경기도	오산시	수원-100%
54	경기도	용인시	수원-57%, 이천-43%
55	경기도	의왕시	수원-100%
56	경기도	의정부시	서울-100%
57	경기도	이천시	이천-100%
58	경기도	파주시	서울-59%, 강화-35%, 철원-6%
59	경기도	평택시	천안-52%, 수원-48%
60	경기도	포천시	철원-74%, 서울-22%, 춘천-4%
61	경기도	하남시	서울-73%, 양평-27%
62	경기도	화성시	수원-100%
63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88%, 통영-12%
6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97%, 산청-2%, 장수-1%
65	경상남도	고성군	통영-47%, 진주-33%, 창원-11%, 남해-8%, 거제-1%
66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41%, 밀양-31%, 창원-28%
67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100%
68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100%
69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73%, 남해-27%
70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92%, 진주-7%, 거창-1%
71	경상남도	양산시	밀양-43%, 울산-34%, 부산-23%
72	경상남도	의령군	합천-53%, 진주-40%, 창원-7%
73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98%, 창원-2%
74	경상남도	창녕군	밀양-64%, 합천-31%, 창원-5%
75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90%, 밀양-7%, 부산-3%
76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99%, 남해-1%
77	경상남도	하동군	산청-45%, 남해-31%, 진주-23%, 남원-1%
78	경상남도	함안군	창원-83%, 진주-17%
79	경상남도	함양군	산청-41%, 장수-30%, 거창-29%
80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78%, 거창-13%, 산청-8%, 진주-1%
81	경상북도	경산시	대구-57%, 영천-43%
82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35%, 울산-33%, 영천-32%
83	경상북도	고령군	합천-79%, 대구-21%
84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96%, 추풍령-4%

〈지자체별 Thiessen 면적 비율(계속)〉

No.	자치단체		Thiessen 면적 비율
85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49%, 대구-18%, 구미-17%, 영천-16%
86	경상북도	김천시	추풍령-51%, 구미-33%, 거창-16%
87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92%, 영주-7%, 보은-1%
88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86%, 태백-8%, 영주-6%
89	경상북도	상주시	추풍령-41%, 문경-39%, 보은-17%, 구미-3%
90	경상북도	성주군	구미-58%, 대구-17%, 거창-15%, 함천-10%
91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79%, 의성-14%, 봉화-7%
92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100%
93	경상북도	영양군	영덕-49%, 봉화-30%, 울진-13, 안동-8%
94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90%, 안동-8%, 봉화-2%
95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97%, 대구-3%
96	경상북도	예천군	문경-42%, 영주-36%, 안동-22%
97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100%
98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72%, 영덕-20%, 봉화-8%
99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84%, 문경-6%, 구미-6%, 안동-4%
100	경상북도	청도군	밀양-69%, 대구-16%, 영천-12%, 울산-3%
101	경상북도	청송군	영덕-39%, 의성-34%, 영천-16%, 안동-11%
102	경상북도	칠곡군	구미-53%, 대구-47%
103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96%, 영천-4%
104	전라남도	강진군	장흥-65%, 해남-35%
105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100%
106	전라남도	곡성군	주암-62%, 남원-34%, 광주-4%
107	전라남도	광양시	여수-41%, 남해-31%, 주암-28%
108	전라남도	구례군	남원-68%, 주암-32%
109	전라남도	나주시	광주-66%, 목포-23%, 장흥-11%
110	전라남도	담양군	광주-83%, 정읍-14%, 주암-2%, 남원-1%
111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100%
112	전라남도	무안군	목포-100%
113	전라남도	보성군	장흥-35%, 고흥-33%, 주암-32%
114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90%, 여수-10%, 고흥-1%
115	전라남도	신안군	목포-100%
116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100%
117	전라남도	영광군	광주-66%, 목포-21%, 정읍-13%
118	전라남도	영암군	목포-53%, 장흥-32%, 해남-16%
119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100%
120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68%, 정읍-32%
121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100%
122	전라남도	진도군	해남-100%
123	전라남도	함평군	광주-50%, 목포-50%
124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71%, 완도-16%, 목포-13%
125	전라남도	화순군	주암-49%, 광주-30%, 장흥-21
126	전라북도	고창군	정읍-79%, 부안-11%, 광주-10%
127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100%
128	전라북도	김제시	부안-46%, 전주-42%, 군산-9%, 정읍-3%

〈지자체별 Thiessen 면적 비율(계속)〉

No.	자치단체		Thiessen 면적 비율
129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80%, 장수-11%, 산청-5%, 임실-4%
130	전라북도	무주군	금산-51%, 거창-26%, 장수-13%, 추풍령-10%
131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100%
132	전라북도	순창군	남원-56%, 정읍-40%, 광주-2%, 임실-2%
133	전라북도	완주군	전주-74%, 금산-23%, 임실-3%
134	전라북도	익산시	전주-41%, 부여-30%, 군산-29%
135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86%, 남원-8%, 전주-5%, 장수-1%
136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93%, 임실-6%, 남원-1%
137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100%
138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87%, 부안-10%, 임실-3%
139	전라북도	진안군	장수-43%, 금산-27%, 전주-18%, 임실-12%
14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50%, 성산-32%, 고산-18%
1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62%, 고산-20%, 성산-18%
142	충청남도	계룡시	대전-100%
143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37%, 대전-32%, 천안-30%, 청주-1%
144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98%, 대전-2%
145	충청남도	논산시	부여-58%, 금산-24%, 대전-17%, 전주-1%
146	충청남도	당진군	서산-94%, 천안-6%
147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100%
148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88%, 보령-10%, 군산-2%
149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100%
150	충청남도	서천군	군산-84%, 보령-12%, 부여-4%
151	충청남도	아산시	천안-100%
152	충청남도	예산군	서산-51%, 천안-41%, 보령-4%, 부여-4%
153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90%, 청주-10%
154	충청남도	청양군	부여-80%, 보령-20%
155	충청남도	태안군	서산-82%, 보령-18%
156	충청남도	홍성군	서산-56%, 보령-44%
157	충청북도	괴산군	충주-50%, 보은-24%, 문경-15%, 청주-11%
158	충청북도	단양군	영주-69%, 제천-31%
159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98%, 대전-2%
160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71%, 금산-29%
161	충청북도	옥천군	보은-53%, 금산-22%, 대전-20%, 추풍령-5%
162	충청북도	음성군	충주-45%, 이천-42%, 청주-13%
163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58%, 충주-30%, 원주-8%, 문경-3%, 영주-1%
164	충청북도	증평군	청주-100%
165	충청북도	진천군	청주-67%, 천안-28%, 이천-5%
166	충청북도	청원군	청주-76%, 보은-15%, 대전-9%
167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100%
168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94%, 이천-4%, 문경-1%, 제천-1%

별첨 2

69개 지점 확률강우량(재현기간 30년)

순 번	지점명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mm)			비 고
		1시간	2시간	3시간	
1	속 초	57.5	87.4	111.0	
2	철 원	72.4	108.4	136.3	
3	대 관령	53.1	86.0	115.8	
4	춘 천	63.9	89.3	109.0	
5	강 릉	65.3	102.0	132.0	
6	동 해	63.7	99.8	125.9	
7	서 울	91.2	134.4	162.4	
8	인 천	81.1	116.0	140.7	
9	원 주	75.4	108.6	134.4	
10	울릉도	59.8	83.2	100.1	
11	수 원	79.5	117.9	146.6	
12	충 주	75.9	105.9	126.0	
13	서 산	75.3	101.9	121.2	
14	울 진	48.6	68.5	85.8	
15	청 주	71.2	100.4	120.6	
16	대 전	75.5	110.2	135.1	
17	추풍령	54.0	74.9	90.4	
18	안 동	57.9	70.6	79.0	
19	포 향	60.6	84.5	103.7	
20	군 산	69.5	103.9	127.3	
21	대 구	65.6	87.4	101.2	
22	전 주	83.1	111.8	130.9	
23	울 산	72.0	105.1	129.7	

순 번	지점명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mm)			비 고
		1시간	2시간	3시간	
24	창 원	78.5	115.1	142	舊 마산
25	광 주	75.2	102.3	120.9	
26	부 산	89.5	127.2	152.2	
27	통 영	77.0	110.2	134.4	
28	목 포	60.6	83.1	99.7	
29	여 수	69.8	100.2	122.0	
30	완 도	79.3	122.3	156.6	
31	제 주	75.6	112.3	140.2	
32	고 산	61.1	88.4	109.1	
33	성 산	108.1	148.4	173.0	
34	서귀포	73.9	106.3	131.6	
35	진 주	74.0	109.1	134.3	
36	강 화	101.7	156.8	196.2	
37	양 평	80.0	119.0	147.5	
38	이 천	76.1	102.9	126.3	
39	인 제	61.8	87.8	108.0	
40	홍 천	72.8	98.7	119.6	
41	태 백	67.5	96.7	117.8	
42	제 천	79.5	112.7	135.5	
43	보 은	75.2	109.8	135.2	
44	천 안	72.3	105.1	129.7	
45	보 령	86.5	123.6	148.6	
46	부 여	84.4	118.8	142.6	

순 번	지점명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mm)			비 고
		1시간	2시간	3시간	
47	금 산	71.5	100.6	119.4	
48	부 안	81.8	110.4	128.8	
49	임 실	66.2	92.9	113.8	
50	정 읍	82.3	107.5	122.2	
51	남 원	70.5	93.0	109.0	
52	장 수	66.3	87.1	100.3	
53	주 암	79.7	117.2	143.2	舊 순천
54	장 흥	80.2	115.4	142.2	
55	해 남	74.8	108.2	135.4	
56	고 흥	93.4	139.5	170.7	
57	봉 화	75.1	104.3	127.6	
58	영 주	65.8	91.6	109.8	
59	문 경	59.7	77.0	88.8	
60	영 덕	56.0	76.5	93.3	
61	의 성	60.8	78.5	91.2	
62	구 미	57.3	71.1	82.5	
63	영 천	61.2	75.9	86.7	
64	거 창	66.3	89.9	107.1	
65	합 천	77.5	107.4	128.2	
66	밀 양	71.6	99.2	118.7	
67	산 청	76.2	121.9	155.3	
68	거 제	85.9	128.5	160.7	
69	남 해	83.2	128.2	163.1	

별첨 3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단위 : mm)

NO	지역명	강우지속기간			NO	지역명	강우지속기간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	서울특별시	95	135	165	26	경기 수원시	80	120	150
2	부산광역시	90	130	155	27	경기 시흥시	85	120	145
3	부산 기장군	85	120	145	28	경기 안산시	80	120	145
4	대구광역시	70	90	105	29	경기 안성시	75	110	130
5	대구 달성군	70	95	110	30	경기 안양시	85	125	150
6	인천광역시	85	120	145	31	경기 양주시	95	135	165
7	인천 강화군	105	160	200	32	경기 양평군	80	120	145
8	인천 옹진군	95	135	165	33	경기 여주군	80	110	135
9	광주광역시	80	105	125	34	경기 연천군	75	110	140
10	대전광역시	80	115	135	35	경기 오산시	80	120	150
11	울산광역시	75	110	130	36	경기 용인시	80	115	140
12	울산 울주군	75	105	130	37	경기 의왕시	80	120	150
13	세종특별자치시	75	105	130	38	경기 의정부시	95	135	165
14	경기 가평군	70	105	125	39	경기 이천시	80	105	130
15	경기 고양시	95	135	165	40	경기 파주시	95	145	175
16	경기 과천시	90	130	160	41	경기 평택시	80	115	140
17	경기 광명시	90	135	160	42	경기 포천시	80	115	145
18	경기 광주시	80	115	145	43	경기 하남시	90	135	160
19	경기 구리시	95	135	165	44	경기 화성시	80	120	150
20	경기 군포시	80	120	150	45	강원 강릉시	60	95	125
21	경기 김포시	100	155	190	46	강원 고성군	60	90	115
22	경기 남양주시	90	130	160	47	강원 동해시	65	100	130
23	경기 동두천시	85	125	155	48	강원 삼척시	70	95	115
24	경기 부천시	90	130	160	49	강원 속초시	60	90	115
25	경기 성남시	85	125	155	50	강원 양구군	65	90	110

(단위 : mm)

NO	지역명	강우지속기간			NO	지역명	강우지속기간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51	강원 양양군	60	90	120	78	충남 논산시	80	115	140
52	강원 영월군	80	110	130	79	충남 당진군	80	105	125
53	강원 원주시	80	110	135	80	충남 보령시	90	125	150
54	강원 인제군	65	90	110	81	충남 부여군	85	120	145
55	강원 정선군	65	95	120	82	충남 서산시	80	105	125
56	강원 철원군	75	110	140	83	충남 서천군	75	110	135
57	강원 춘천시	65	90	110	84	충남 아산시	75	110	130
58	강원 태백시	70	100	120	85	충남 예산군	75	105	130
59	강원 평창군	65	95	125	86	충남 천안시	75	105	130
60	강원 홍천군	70	100	120	87	충남 청양군	85	120	145
61	강원 화천군	70	100	120	88	충남 태안군	80	110	130
62	강원 횡성군	75	105	130	89	충남 홍성군	85	115	135
63	충북 괴산군	75	105	125	90	전북 고창군	85	110	125
64	충북 단양군	70	100	120	91	전북 군산시	70	105	130
65	충북 보은군	80	110	140	92	전북 김제시	85	115	130
66	충북 영동군	60	85	100	93	전북 남원시	75	95	115
67	충북 옥천군	75	110	130	94	전북 무주군	70	95	115
68	충북 음성군	80	105	130	95	전북 부안군	85	115	130
69	충북 제천시	80	110	135	96	전북 순창군	80	100	115
70	충북 증평군	75	105	125	97	전북 완주군	80	110	130
71	충북 진천군	75	105	125	98	전북 익산시	80	115	135
72	충북 청원군	75	105	125	99	전북 임실군	70	95	115
73	충북 청주시	75	105	125	100	전북 장수군	70	90	105
74	충북 충주시	80	110	130	101	전북 전주시	85	115	135
75	충남 계룡시	80	110	135	102	전북 정읍시	85	110	125
76	충남 공주시	80	115	140	103	전북 진안군	75	100	115
77	충남 금산군	75	105	120	104	전남 강진군	80	115	140

(단위 : mm)

NO	지역명	강우지속기간			NO	지역명	강우지속기간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05	전남 고흥군	95	140	175	137	경북 영덕군	60	80	95
106	전남 곡성군	80	110	135	138	경북 영양군	65	85	105
107	전남 광양시	80	115	145	139	경북 영주시	70	95	110
108	전남 구례군	75	105	120	140	경북 영천시	65	80	90
109	전남 나주시	75	100	120	141	경북 예천군	65	85	95
110	전남 담양군	80	105	125	142	경북 울릉군	60	85	105
111	전남 목포시	65	85	100	143	경북 울진군	55	75	95
112	전남 무안군	65	85	100	144	경북 의성군	65	80	95
113	전남 보성군	85	125	155	145	경북 청도군	70	95	115
114	전남 순천시	80	120	145	146	경북 청송군	60	80	90
115	전남 신안군	65	85	100	147	경북 칠곡군	65	80	95
116	전남 여수시	70	105	125	148	경북 포항시	65	85	105
117	전남 영광군	75	100	120	149	경남 거제시	85	130	160
118	전남 영암군	70	100	120	150	경남 거창군	70	95	110
119	전남 완도군	80	125	160	151	경남 고성군	80	115	140
120	전남 장성군	80	105	125	152	경남 김해시	85	120	140
121	전남 장흥군	85	120	145	153	경남 남해군	85	130	165
122	전남 진도군	75	110	140	154	경남 밀양시	75	100	120
123	전남 함평군	70	95	115	155	경남 사천시	80	115	145
124	전남 해남군	75	110	135	156	경남 산청군	80	125	155
125	전남 화순군	80	115	140	157	경남 양산시	80	110	135
126	경북 경산시	65	85	95	158	경남 의령군	80	110	135
127	경북 경주시	65	90	110	159	경남 진주시	75	110	135
128	경북 고령군	75	105	125	160	경남 창녕군	75	105	125
129	경북 구미시	60	75	85	161	경남 창원시	80	115	145
130	경북 군위군	65	80	95	162	경남 통영시	80	115	135
131	경북 김천시	60	80	95	163	경남 하동군	80	125	155
132	경북 문경시	65	80	95	164	경남 함안군	80	115	145
133	경북 봉화군	75	105	130	165	경남 함양군	75	105	125
134	경북 상주시	60	85	100	166	경남 합천군	80	110	130
135	경북 성주군	65	85	95	167	제주 서귀포시	85	120	140
136	경북 안동시	60	75	85	168	제주 제주시	80	115	140

2012/2013년도 어업면허 처분 공고

군산시 공고 제2012-2103호

2012/2013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한 어업면허 처분사항에 대하여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29

군 산 시 장

○ 어업면허 처분 사항

어업의종류	양식방법	면허번호	면적 (ha)	면허기간	어장위치	면허처분일	어업권자
마을어업	—	5271	96	2012. 10.26 ~ 2015. 10.25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해역	2012.10.26	무녀도어촌계 대표 어촌계장
마을어업	—	5272	3	2012. 10.26 ~ 2015. 10.25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해역	2012.10.26	무녀도어촌계 대표 어촌계장
마을어업	—	5273	4.5	2012. 10.26 ~ 2015. 10.25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해역	2012.10.26	무녀도어촌계 대표 어촌계장
해조류 양식어업	부류식	5606	20	2012. 10.26 ~ 2022. 10.25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해역	2012.10.26	무녀도어촌계 대표 어촌계장
해조류 양식어업	부류식	5607	11	2012. 10.26 ~ 2022. 10.25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해역	2012.10.26	무녀도어촌계 대표 어촌계장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안) 주민의견 수렴 공고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제6조의4,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신규 도로명(안) 및 도로구간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0. 30 ~ 11. 12

군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12. 10. 30 ~ 11. 12 (14일간)
 2. 대 상 :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공항북로 외3건)
 3. 도로구간의 기점과 종점 : 붙임 참조
 4. 도로의 길이 : 붙임 참조
 5. 도로명 및 부여사유 : 붙임 참조
 6.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 가. 기 간 : 2012. 10. 30 ~ 11. 12 (14일간)
- 나. 방 법 : 서면(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 다. 서 식

연번	도로명	의 건 제 출 사 유	인 적 사 항	
			성 명	연 락 처
예시)1	공항북로		홍길동	010-XXX

7.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 절차

가. 공고된 도로명 및 도로구간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의견수렴 → 제출된 의견 군산시 도로명주소 위원회 상정 → 군산시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확정 →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

8. 기타

가. 중심선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사항 :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지리정보계 (☎ 454-3983)

붙 임 : 도로명(안) 및 도로구간 변경(안) 1부. 끝.

도로명 부여 주민 의견수렴

도로명(안) : 공항북로



시 점	중 점	부 여 사 유
옥서면 옥봉리 1773-26	옥서면 옥봉리 839-8	□ 주요건물(군산공항) 명칭 인용 - 『군산공항』진입로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 도로명은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명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길이(m)	폭(m)	
1,770m	49m	

도로명 부여 주민 의견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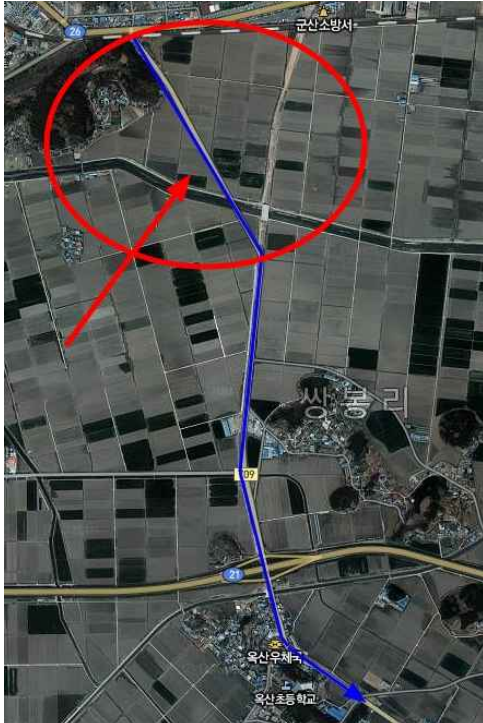
도로명(안) : 남상길



시 점	중 점	부 여 사 유
임피면 읍내리 97-2	임피면 읍내리 506-7	□ 마을명칭 인용 - 『남상마을』명칭 인용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 도로명은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명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길이(m)	폭(m)	
490m	8m	

도로명 부여 주민 의견수렴

도로명(안) : 사정동길



원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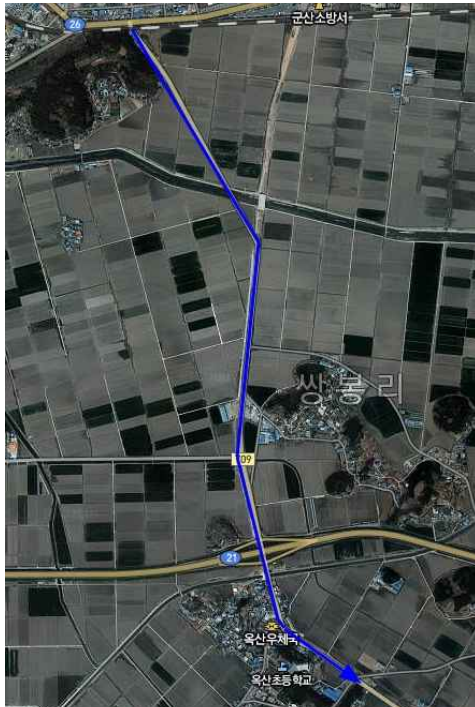


근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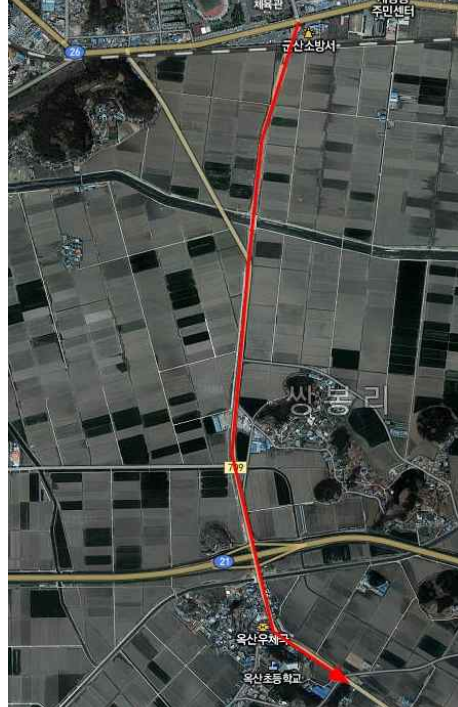
시 점	중 점	부 여 사 유
사정동 562	옥산면 옥산리 740-27	□ 행정구역 명칭 인용 - 『사정동』명칭 인용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 도로명은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명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길이(m)	폭(m)	
970m	10m	

도로구간 변경 주민 의견수렴

도로구간 변경(안) : 옥산로



변경 전



변경 후

도 로 명

옥산로

시 점

사정동 562

중 점

옥산면 남내리
506-3

길이(m)

2,739m

폭(m)

11m

변 경 사 유

□ 신규 도로개설

- 군산소방서 옆 도로개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의 2

- 도로의 폭,방향,교통흐름 등 도로의 특성을 고려할 것

분할개시결정 공고

군산시 공고 제2012-2124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12. 10. 30 ~ 2012. 11. 21

2. 공고 내용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의인 외 인
시·군·구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군산시		중앙로1가	20-13	대	110.5	김갑식	1944. 2. 5	군산시 중앙로1가 20-13	
군산시		개복동	11-2	대	173	박종만	1954. 6.20	군산시 나운동 롯데아파트 207동 1303호	
군산시		명산동	18-31	대	69	고양근	1939. 1. 9	군산시 명산동 18-31	한주현
군산시		영동	5-5	대	281	김성현	1955. 1.24	군산시 영동 5-5	이명례
군산시		평화동	108-1	대	86	박정자	1946.11.30	군산시 평화동 108-1	황도수
군산시		대명동	187-3	대	152	김덕수	1946.10.14	군산시 대명동 187	김맹권
군산시		소룡동	785	대	374	노순석	193511.22	군산시 소룡동 800	김재남
군산시		산북동	1928-5	대	388	이흥택	1948. 8.15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 모터에비뉴 3308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42-3	대	159	최영숙	1974. 8.15	군산시 미룡동 897-2 군산미룡1주공아파트 101동 1105호	

2012년 10월 30일

군 산 시 장